

인천도시관리계획(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8. 6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(변경)
 - 1)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 - 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 - 3) 가구 및 획지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 - 공동주택용지(변경)

획지 번호	면적(㎡)	세대수(호)		인구수(인)		주택유형		비고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합계	81,533.8	1,470	1,570	4,116	4,396	-	-	
B1	51,786.2	587	820	1,644	2,296	60~85㎡ 이하	60~85㎡ 이하	일반분양
		133		372		85㎡초과		
B2	29,747.6	750	450	2,100	1,260	60㎡이하	60㎡이하	국민임대 →공공임대
			300		840		60~85㎡ 이하	

4)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가. 건축물 용도계획(변경없음)

나. 건축물 용적률·건폐율·높이계획(변경)

○ 공동주택용지(변경)

항 목	도면표시	건폐율	용 적 률		높 이	
		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
공동주택용지	B1, B2	30%이하	160%이하	200%이하	최고15층 이하	-

다. 배치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라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○ B1, B2(변경)

도면번호	획지번호	구 분	계 획내용
B1,B2	-	지정용도	○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(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)
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 30% 이하
		용 적 률	기정 ○ 160% 이하
			변경 ○ 200% 이하
		높 이	기정 ○ 최고 높이 : 15층이하
			변경 -
		배 치	○ 별표3의 B
		형 태	○ 별표2의 B
		색 채	○ 별표4의 B
		건축선	○ 건축한계선 3m : 가로변 ○ 건축한계선 5m : 단독주택지 경계

4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○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○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
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: 열람 장소에 비치

5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560-4763)